


군포산본 래미안하이어스
공가세대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안)
[인터넷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25(수)]

■ 공급위치 :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91
■ 공급대상 : 군포산본 래미안하이어스 20세대 (전용면적 59㎡)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간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잔금 납부기한(2023.12.29.)이 계약체결기간(2023.11.27.~11.29.) 만료일로부터 30일 내로 기간이 짧으며, 주택가격에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금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서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금번 공고는 재건축매입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공급이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공사(LH)에서 10년 이상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빌트인 가구(불박이장 등),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접수 전 **형별로 일부세대를 개방**하오니 세대개방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일시 및 세대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서류 제출	계약체결
일 정	1순위: 11월 6일(월) 2순위: 11월 7일(화)	11월 13일(월)	11월 16일(목) ~ 11월 17(금)	11월 27일(월) ~ 11월 29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00)	개별조회 (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등기우편제출 혹은 방문제출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방문 계약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 소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관리부 일반매각 담당자 앞 (우편번호)13637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일반우편 접수는 불가능 - 우체국소인이 11.17(금)인 등기우편 까지만 유효 ■ (방문접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분양전환 상담센터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분양전환 상담센터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25(수)**이며, 이는 신청자격(청약신청, 거주지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매각 공고일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등으로 판단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동별·층별·향별 등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당첨자의 동호는 미계약(미접수)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동호만 계약 가능)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일자에 미신청 및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단지명	주택관리번호
군포산본 삼성래미안하이어스	2023000559

- 본 공고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 무주택기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선정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계약대상자 서류 제출일에 계약대상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해제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순위별(1순위, 2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을 계약할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계약시 필요서류 제출(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 증명서류 추가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기타 단지 여건,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본인이 주택개방일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미 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후 공급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급호수

1 공급호수 및 공급가격 등

단지명	신청 형태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공급 호수
			공급면적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군포산본 래미안하이어스	59	59.9400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20	

공급가격 등

단지명	동	호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분양가격(원)			난방
				공급면적			기타 공용	계약 면적 (계)	계(100%)	계약금 (10%)	잔금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군포산본 삼성래미안 하이어스	112	301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579,500,000	57,950,000	521,550,000	지역 난방
	112	401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579,500,000	57,950,000	521,550,000	
	112	801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599,500,000	59,950,000	539,550,000	
	112	803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599,500,000	59,950,000	539,550,000	
	112	1104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612,000,000	61,200,000	550,800,000	
	112	1701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612,000,000	61,200,000	550,800,000	
	112	1703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612,000,000	61,200,000	550,800,000	
	112	1903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612,000,000	61,200,000	550,800,000	
	112	2203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612,000,000	61,200,000	550,800,000	
	113	601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599,500,000	59,950,000	539,550,000	
	113	801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599,500,000	59,950,000	539,550,000	
	113	1001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599,500,000	59,950,000	539,550,000	
	113	1101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612,000,000	61,200,000	550,800,000	
	113	1502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612,000,000	61,200,000	550,800,000	
	113	1903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612,000,000	61,200,000	550,800,000	
	121	801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599,500,000	59,950,000	539,550,000	
	126	102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559,500,000	55,950,000	503,550,000	
	126	401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579,500,000	57,950,000	521,550,000	
126	1202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612,000,000	61,200,000	550,800,000		
126	1702	59	59.94	27.714	87.6540	37.6570	125.3110	612,000,000	61,200,000	550,800,000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당초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빌트인 가구(불박이장 등),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개방일 : 2023.11.02(목) ~ 11.03(금),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구분	개방세대	주택개방일시
군포산본 삼성래미안하이어스	113동 1502호(59형), 126동 401호(59형)	2023.11.2(목)~2023.11.3(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금 및 입주잔금 납부

- **계약금** :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계좌로 납부하며,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장수납 불가)
[납부계좌 : 국민은행 661701-01-230448 (예금주: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명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3901동 0104호 홍길동 → 39010104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우리 공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잔금** :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2023.12.29.(금) 까지 (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우리 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완납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잔금은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선납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추후 변동 가능)]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각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대출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에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열쇠 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 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 관리비에치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납부합니다(세대별 관리비에치금액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 예정**)

3 신청자격, 신청순위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5.)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 신청순위에 해당하는 자
- ※ 1주택 1세대 신청 원칙으로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동일 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신청자는 입주(잔금납부)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순위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계약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4. 주택소유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청순위

단 지 명		군포산본 삼성래미안하이어스
신청 순위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동일 순위내 경쟁시	1순위	1)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1년 이상 거주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3) 저축 총액이 많은 자 4) 추첨(1순위 당첨자 결정순차가 동일한 경우)
	2순위	1)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1년 이상 거주자 2) 추첨

※ 선순위 신청자가 호수의 6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미접수,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당일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게시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22.10.25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22.10.25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등·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LH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등·호 발생 시에도 등·호 변경불가)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동호 포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추첨(1순위 당첨자 결정순차가 동일한 경우)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단지별 형별 공급세대수의 5배까지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함

4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하였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유주택자)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 소유 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됨.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 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5 신청일정 방법 및 장소

■ 신청 일정·방법 및 장소

신청일정	순위	신청방법	신청장소
2023.11.06(월) 10:00~17:00	1순위	인터넷신청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
2023.11.07(화) 10:00~17:00	2순위		

※ 청약신청은 인터넷(모바일)으로만 받으며 마감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자는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선순위 신청자가 호수의 6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및 해당자격자는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당일 20:00 이후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방문접수 불가)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예비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전산검색 후 적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부적격자의 소명 등으로 경우에 따라 계약체결 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합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내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등 일정 및 장소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예비입주자) 명단은 **'23.11.13(월) 16시** 이후부터 **내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당첨자)
일시	2023.11.13(월) 16:00	2023.11.16(목) ~ 2023.11.17(금) 10:00~17:00	2023.11.27(월) ~ 2023.11.29(수) 10:00~17:00
장소	내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내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209호 분양전환 상담센터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확인방법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내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계약체결기간 안내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 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자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중 부적격자 발생, 또는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내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관리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신청시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10.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발급

서류 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사항	제출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등 전부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등 전부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해당자만 제출 ·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이며 기혼일 경우 제출(무주택기간 산정용)
○		⑥ 신분증 및 도장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배우자가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도장 지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본인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양식 별첨 참조
○		⑦ 서약서	본인	· 계약체결일에 현장에서 작성 후 제출(계약 장소에 비치), 미제출 시 계약체결 불가 · 양식 별첨 참조
○		⑧ 주택상태확인서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5)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5)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대리신청시 추가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인감증명서(신청자본인발급분)가 첨부된 위임장,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2023.11.16(목)~11.17(금)]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도 서류제출 기한[~ 11. 17.(금)]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만 예비당첨자로 등록되며 서류 미제출 시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당첨자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 없음).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 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① 계약금 입금 영수증(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의 경우 현장확인 가능, 단 현장수납은 불가) - 계약자명으로 입금 요망 [납부계좌 : 국민 661701-01-230448 (예금주: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래프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 시 서명날인 불가)	
	④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계약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경우에만 추가제출)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인감도장날인 필수) ② 당첨자 인감증명서 (당첨자 발급분, 용도 : 분양계약위임용)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① 당첨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청약·당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고,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신청 접수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무주택서약을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 검색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을 참고 하시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 (소명기간 : 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불가합니다. ▪ 당첨 후 미소명 등의 사유로 부적격시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주택은 분양권 전매,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계약체결기간 만료일(23.11.29)부터 30일(23.12.29) 이내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총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기한(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관리비는 잔금납부기한 이전 입주 시는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그 이후 입주 시는 잔금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입주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을 계약할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계약시 필요서류 제출(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 증명서류 추가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잔금 및 관리비에치금 등 납부 완료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공고 중 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 주택
- 당해 주택은 당초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빌트인 가구(불박이장 등),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개방일 : 2023.11.02(목) ~ 11.03(금),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구분	개방세대	주택개방일시
군포산본 삼성래미안하이어스	113동 1502호(59형), 126동 401호(59형)	2023.11.2(목)~2023.11.3(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209호 분양전환상담센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오시는 길
 - 지하철 : 오리역(분당선) 1번 출구
 - 일반버스 : 2-1, 60, 77-1, 101, 116-1, 116-3, 222, 300, 380, 390, 520, 700-2, 820
 - 간선버스 : 102, 1005-1, 1111, 1303, 3500, 5500-1, 7007-1, 8100, 8101, 8016, 8109, 9414

문 의	LH 분양전환 상담센터 031-738-4534 (평일 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인 터 넷	LH 홈페이지: http://lh.or.kr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2023. 10. 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제38조의7에 따라 자료를 제공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일정기간이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이하 같다.)의 청약 신청자(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분양계약 및 당첨자 명단 관리, 분양주택 정책 자료 활용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분양주택 특별공급 자격 정보, 입주자저축 정보, 주택소유 정보, 과거 당첨사실에 관한 정보
소득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input type="checkbox"/>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법」 제38조의7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50조의5에 따른 거주 의무 실태조사자,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자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분양주택의 청약 신청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분양주택의 당첨자 계약 및 명단 관리, 거주 의무 실태조사,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청약 신청자 당첨·계약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 세대주(분양주택 입주 신청자)의 분양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분양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모집공고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해당세대)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				-		
	-				-		

주) 만14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23.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귀하

